

	전과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20. 4. 1.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 16조 2에 의한 교내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과 신청) ①전과의 신청은 학칙 제 16조 2의 ①항에 해당되는 학년 및 학기 개시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전과의 신청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전과 신청 자격은 각 학부(과)에서 정하고 총장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조(전과 인원) ①학과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과의 전입 및 전출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단, 유아교육과 및 보건계열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용하며, 간호학과의 전과는 불허한다.<개정 2017.1.16><개정 2020.4.1>

② 삭제

③ 삭제

④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전 항 개정 2013.10.28>

제4조(전과의 심사 및 허가) ①전과 지원자에 대한 심사는 각 호를 심사하여 전입 학과별로 정하되 총장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.

1. 전과지원서

2. 성적증명서

3. 기타 대학에서 정하는 구비서류

②전과 지원자가 허용인원을 초과 할 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.

1. 재학 기간 중 성적 30%, 면접 70%로 선발한다.

2. 동점자가 나올 경우 취득학점을 우선하며, 같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③다만,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과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.

제5조(전과제한) ①전과는 재학 기간 중 제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. 다만,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한다.

②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과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<전 항 개정 2013.10.28>

제6조(이수학점) 전과한 자는 전출 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시행세칙 등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